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44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2월 3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의 해외 기업·자본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
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재단의 사업, 정관 기재사항, 임원 및 이사회, 직원 임명 등에
관한 사항 명시(안 제4조부터 제10조)
- 나. 기본재산의 조성, 출연금 및 기금, 운영재원, 수익사업, 사업
연도, 사업계획서 및 예산·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
(안 제11조부터 제16조)
- 다. 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, 지도·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
사항 명시(안 제17조부터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일부 반영)

※ 반영(제1조, 제3조, 제5조) : 조례안의 적용 범위 명확화

※ 미반영(제7조, 제8조, 제21조)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 법령에 이미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조항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4. 11. 14. ~ 12. 4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 (☎ 2133-4824)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인투자”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2.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5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
2. 외국인투자 · 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3.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
4. 공간, 자금, 투자,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
5.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
6. 그 밖에 정부,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·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등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기금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사업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

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.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이사,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

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, 그 밖에 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대표이사와 감사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

한다.

제11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2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②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·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수탁사업수입금,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

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.

제18조(보고 및 검사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경영평가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수행방식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0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**I. 비용추계 요약****1. 비용발생 요인 : 재단 출연금(기본재산 및 운영비)**

-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- 가격기준 : 서울투자진흥재단(Invest Seoul)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
- 추계기간 :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 ('25 ~ '29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지출	○ 기본재산	1,000	-				1,000
	○ 사업비	6,008	6,105	6,204	6,305	6,407	31,029
	○ 인건비	3,846	3,908	3,971	4,035	4,101	19,861
	○ 운영경비	901	916	931	946	961	4,655
	소계(a)	11,755	10,929	11,106	11,286	11,469	56,545
수입	○ 이자수입	35	35	35	35	35	175
	○ 임대·대관수입	101	103	104	106	107	521
	소계(b)	136	138	139	141	142	696
□ 총 비용(a-b)		△11,619	△10,791	△10,967	△11,145	△11,327	△55,849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-	-	-	-	-	-
	세외수입	136	138	139	141	142	696
	지방채 등	-	-	-	-	-	-
	민간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136	138	139	141	142	696

5. 덧붙이는 의견

- 재단 전환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은 기존 서울시가 운영하던 사업을 신설 재단에 이전하여 재정운영 주체가 변동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투입은 아님
- 다만, 재단 설립후 5년간 비용추계가 565억원이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실행하는 등 자체 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재단의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점차 낮출 계획임

6. 작성자 :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(02-2133-482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기본재산 : 10억원

2. 연간예산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

※ 사업비 연 1.62% 증가, 인건비 연 1.62% 인상, 운영경비 연 1.62% 인상

연도	항 목	내 역	예산금액(억원)	산출기초
	총 계 (‘25년~’29년)		565	
2025	재단설립 준비금	기본재산	10	▶ 현금 10억원 출연
	재 단 운 영	인건비	38	▶ 조 직 : 5개 팀 ▶ 인 원 : 50명(정규직 5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사업비	60	▶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▶ 국내외 홍보·브랜딩, 서울 투자정보 제공 ▶ 서울투자환경 설명회,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▶ 투자자 발굴 및 매칭,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▶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▶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,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▶ FDI 종합지원,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, 투자여건 개선 지원
		운영비	9	▶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
		계	117	
2026	재 단 운 영	인건비	39	▶ 조 직 : 5개 팀 ▶ 인 원 : 50명(정규직 5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사업비	61	▶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▶ 국내외 홍보·브랜딩, 서울 투자정보 제공 ▶ 서울투자환경 설명회,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▶ 투자자 발굴 및 매칭,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▶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▶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,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▶ FDI 종합지원,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, 투자여건 개선 지원
		운영비	9	▶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
		계	109	
2027	재 단 운 영	인건비	40	▶ 조 직 : 5개 팀 ▶ 인 원 : 50명(정규직 5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사업비	62	▶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▶ 국내외 홍보·브랜딩, 서울 투자정보 제공 ▶ 서울투자환경 설명회,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▶ 투자자 발굴 및 매칭,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▶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▶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,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▶ FDI 종합지원,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, 투자여건 개선 지원
		운영비	9	▶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
		계	111	

연도	항 목	내 역	예산금액(억원)	산출기초
2028	재 단 운 영	인건비	40	▶ 조 직 : 5개 팀 ▶ 인 원 : 50명(정규직 5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사업비	63	▶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▶ 국내외 홍보·브랜딩, 서울 투자정보 제공 ▶ 서울투자환경 설명회,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▶ 투자자 발굴 및 매칭,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▶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▶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,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▶ FDI 종합지원,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, 투자여건 개선 지원
		운영비	10	▶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
		계	113	
2029	재 단 운 영	인건비	41	▶ 조 직 : 5개 팀 ▶ 인 원 : 50명(정규직 50명) ▶ 내 용 : 급여, 수당, 퇴직급여, 복리후생비 등
		사업비	64	▶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▶ 국내외 홍보·브랜딩, 서울 투자정보 제공 ▶ 서울투자환경 설명회, 투자유관기관 네트워킹 ▶ 투자자 발굴 및 매칭, 서울 유망기업 투자 촉진 ▶ 국내외 투자자초청 플래그십 행사 ▶ 해외 기업 유치 마케팅, 서울 클러스터 연계 마케팅 ▶ FDI 종합지원,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, 투자여건 개선 지원
		운영비	10	▶ 법정부담금, 업무추진비, 교육훈련비, 여비, 통신비, 일반관리비 등
		계	115	